

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시 꼭! 챙겨야 할 사항



우리 시는 수출, 석유화학·철강·건설업을
영위하는 중소·중견기업의
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.

2026년 4월

법인지방 소득세

신고·납부의 달

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

- ✓ 신고서·기타서류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
- ✓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무방

신고서 제출서류 목록

분류	종류	서식 (지방세법 시행규칙)
신고서	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	별지 제43호
	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	별지 제43호의2
	안분명세서	별지 제44호의6
	공제(감면)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	별지 제43호의3
	가산세액 계산서	별지 제43호의4
	특별징수세액명세서	별지 제43호의5
첨부 서류	재무상태표	
	포괄손익계산서	
	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	
	현금흐름표 →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	
	소급공제환급금신청서 → 해당 법인만	별지 제43호의9,10
	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→ 해당 법인만	별지 제43호의12
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→ 해당 법인만	별지 제43호의14	
기타 서류	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→ 해당 법인만	별지 제43호의13

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·납부

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식

$$\left(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종업원수}}{\text{법인의 총 종업원수}} + 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건축물 연면적}}{\text{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}} \right) \div 2$$

※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무신고가산세 부과

신고방법

- 위택스(www.wetax.go.kr)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또는 사·군·구청 세정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
- ※ 전자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

직권 연장(중소·중견기업)

- 수출기업: 수출비중,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선정
- 석유화학·철강·건설: 주업종,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선정
- 고용·산업위기 지역: 여수 등 고용·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 소재 기업

세원지원 대상

세정지원 기준

수출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'24년 대비 '25년 매출이 감소할 것 ① '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% 이상인 중소/중견기업 ② 무역협회 선정 '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'·'수출의탑 수상기업'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'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'
석유화학·철강·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석유화학/철강/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/중견기업으로서 '24년 대비 '25년 매출이 감소한 기업
고용·산업위기 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수 등 고용/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/중견기업 ※ (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) 여수시, 포항시, 서산시, 광주 광안구, 울산 남구 (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) 여수시, 포항시, 서산시, 광양시

※ 직권 연장 대상 중소/중견기업은 국제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으로,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.

- 연장기한: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납부기한 연장

신청 연장

- 대상: 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 또는 ② 중동 전쟁 피해를 입은 중소·중견기업*
* 해운·항공, 정유·석유화학, 수출·건설플랜트
- ※ 근거법령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6조,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

- 신청방법: 정읍시청 감사과에 신청서* 제출

* 신청서: 법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,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, 연장사유 및 그 밖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문의처 : 정읍시청 세정과 ☎ 063-539-5287



행정안전부 캐릭터 다행이·부리부리

신고대상

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

신고·납부기한

2026. 4. 30.(목)까지

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총정로 234
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





법인지방소득세 개요

- 개념** :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
- 과세대상 법인소득** : 각 사업연도 소득, 토지 등 양도소득, 미환류 소득, 청산소득 지방세법 제87조
- 신고·납부기한** :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지방세법 제103조의23
 ※ 연결법인의 경우,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지방세법 제103조의37
- 과세표준 및 세율** 지방세법 제103조의20

① 내국법인(②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)

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액
2억원 이하	0.9%	-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.9%	200만원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.1%	4,200만원
3천억원 초과	2.4%	9억 4,200만원

② 「법인세법」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*하는 내국법인

* 부동산산업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

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액
200억원 이하	1.9%	-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.1%	4,000만원
3천억원 초과	2.4%	9억 4,000만원

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라면?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.

근거법령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23④, 제103조의37⑤

적용대상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하는 내국법인 단, '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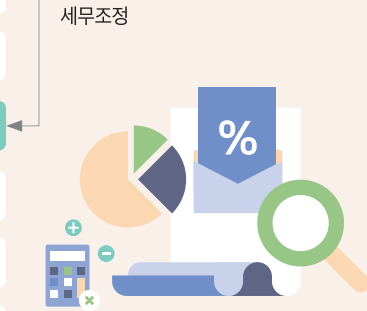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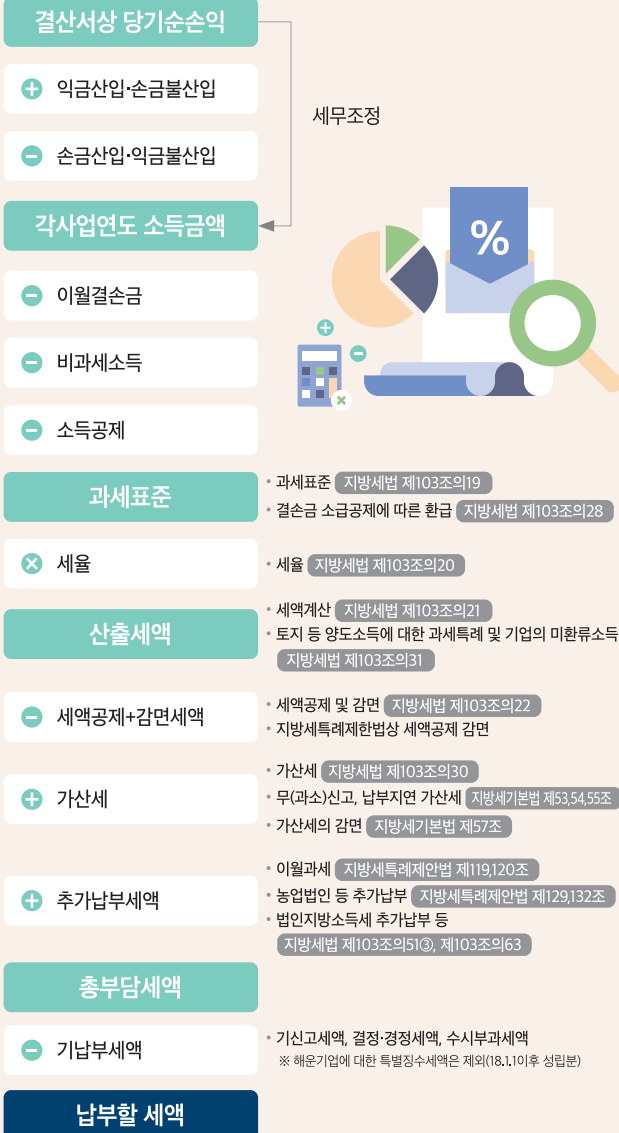
분납금액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,

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%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

납부할 세액 예시



법인지방소득세 계산 흐름도



-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3조의19
-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지방세법 제103조의28
-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
- 세액계산 지방세법 제103조의21
-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 지방세법 제103조의31
- 세액공제 및 감면 지방세법 제103조의22
-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
- 가산세 지방세법 제103조의30
- 무(과소)신고,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,54,55조
- 가산세의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57조
-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9,120조
- 농업법인 등 추가납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9,132조
-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지방세법 제103조의51⑤, 제103조의63
- 기신고세액, 결정·경정세액, 수시부과세액
 ※ 해운기업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은 제외(18.1.1이후 성립분)

문의처 : 정읍시청 세정과 ☎ 063-539-5287



특별징수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은 이렇게

● 총부담세액 > 기납부세액 :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

사례 총부담세액 10,000원, 특별징수세액 4,000원, 본점 A시(70%), 지점 B시(30%), 특별징수시 C시

총부담세액	기납부세액		→ 각 사업장에 안분신고	특별징수 세액은 납세자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
4,000원	A(본점) (70%)	B(지점) (30%)		
6,000원			→ 차감납부세액 (안분신고납부)	

구분	사업장		특별징수지 C
	A(70%)	B(30%)	
총 부담세액	10,000원		징수세액
안분세액	7,000원	3,000원	4,000원
기납부 세액	총액	4,000원	
	안분	2,800원	1,200원
차감납부할세액	4,200원	1,800원	

● 총부담세액 < 기납부세액 : 총부담세액에 상응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, 초과환급금은 본점 가산

사례 총부담세액 10,000원, 특별징수세액 31,000원, 본점 A시(70%), 지점 B시(30%), 특별징수시 C시

총부담세액	기납부세액		→ 총부담세액 안분	납세자의 총부담세액 만큼만 특별징수세액을 안분하여 각 사업장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
10,000원	A(본점) (70%)	B(지점) (30%)		
	21,000원		→ 환급대상액 (본점 일괄 환급)	환급세액은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환급

구분	사업장		특별징수지 C
	A(70%)	B(30%)	
총 부담세액	10,000원		징수세액
안분세액	7,000원	3,000원	31,000원
기납부 세액	총액	31,000원	
	안분대상액	10,000원(총부담세액)	
	안분	7,000원	3,000원
	본점가산 (=환급)	21,000원 (31,000원-10,000원)	
소계	28,000원	3,000원	
차감납부할세액	-21,000원	0원	